

기금운용심의회 운영규정

2018. 07. 01. 최초제정

2022. 03. 01. 부분개정

2026. 03. 16. 부분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 적립금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03.01.>

제2조(기금운용) ①대학의 적립금은 원금보존적립금과 임의적립금으로 구분하고, 성격에 따라 연구적립금, 건축적립금, 장학적립금, 퇴직적립금 및 그 밖에 구체적인 목적을 정하여 적립하는 특정목적적립금으로 구성하는데, 이를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그 적립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진출된 적립금 상당액을 제외한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법인에 투자할 수 있다.

1. 적립금의 2분의 1한도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의 취득
2. 적립금의 10분의 1한도에서 해당 대학의 소속 교원 또는 학생이 개발한 신기술 또는 특허 등으로 창업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②대학의 장 및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적립금 투자 대상이 해당 대학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투자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구성 및 자격) ①대학에 두는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은 대학의 장으로 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개정 2022.03.01.>

②위원장은 기금운용심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부위원장 1인을 선임한다.<개정 2022.03.01.>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교원, 직원 및 재학생은 각각 2명 이상, 제2호에 따른 외부 전문가는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2.03.01., 2026.03.16.>

1. 해당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직원 및 재학생
2.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
3. 그 밖에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이를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한다.

제4조(추천 및 위촉) ①위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교직원 위원은(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인사 포함) 위원장이 위촉하되, 예산 부서의 1인은 당연직으로 포함한다.
2.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은 교원, 직원, 학생, 외부 전문가,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2.03.01.>

②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서 자산운용 또는 위험관리평가 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경제, 경영 또는 금융 관련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이상의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2.03.01.>

제5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간사) ①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관리 등의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7조(회의소집) 위원회는 대학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8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2.03.01.>

1. 매 회계연도에 따른 기금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에 관한 지침의 제정 및 개정
3.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이 기금의 관리 및 운용과 관련하여 기금운용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그 밖의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 의결을 거쳐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2.03.01.>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 보존한다.

제11조(예산)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비를 포함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세칙을 두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